4. 勤勞者의 住居安定과 목돈마련支援에 관한 法律中 改正法律(案)

財政經濟院 公告 第1995－47號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ㅇ 담보능력이 미약한 저소득근로자 및 무주택서민이 주택자금 융자를 받는 경우 이들에 대한 신용보증을 원활히 하고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의 확충이 필요한 바,

－동 기금에 대한 주택금융기관의 출연기한이 199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보증업무 지원을 위해 출연기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 종)를 재정경제원장관(참조 : 산업자금담당관, 500-5357, FAX 503-9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나의 손은 정밀시공 나의 눈은 품질관리